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11월 25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불공정무역조사팀 정석진 팀장(203-5880), 문현철 주무관(203-5887)

지식재산권 침해, 원산지 위반 제품 수입… 이제 그만!
- 무역위원회,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-

□ 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지재권침해물품이나 원산지 위반 물품이 수입될 경우 정부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활용해 대처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 발전방안을 찾는 심포지엄이 열렸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(위원장 홍순직)는 11. 24.(월) 코엑스에서 산업계, 법조계 및 대학생 등 약 2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『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』을 열었다.

○ 심포지움에서는 무역위원회, 특허청, 경찰청에서 외국산 지재권침해물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받는 국내 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 소개와 기업체, 법률회사 전문가의 사례 발표순으로 진행했다.

□ 이날 행사에서 한국베어링공업협회가 『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』로 추가 지정했다.

○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시중에 유통되는 지재권침해 수입물품 등을 업계에서 자발적인 감시를 위해 무역위원회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14개의 센터가 있다.

○ 또한 전국의 대학생 27명으로 구성되는 『제2기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』가 발족했다. 지재권 지킴이는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대학생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제도홍보와 온라인 불법제품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다.

□ 심포지엄에 참석한 무역위원회 이운호 상임위원은 "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, 유럽, 아세안 등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(FTA)을 적극적으로 체결해 왔고 최근에는 중국,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가로 체결해 우리 경제영토를 넓히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발판을 마련하였지만, 이 때문에 불법 수입제품이 우리시장에 유입될 우려가 더 커진 것도 사실이다." 라고 말했다.

○ 더불어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기관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당부했다.

<붙임> 1. 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」 개요
2.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
3.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개요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정석진 불공정무역조사팀장(☎044-203-588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제3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요

□ 추진 배경

○ 외부 지재권 전문가 및 대학생, 업계 종사자 등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관련 무역위 조사제도 안내 및 홍보

○ 경찰청, 특허청 등 각 정부기관의 정책을 설명하고 영업비밀·특허권 침해 분쟁사례와 美 ITC의 판결 사례 등을 소개

* 행사장內 상표권, 원산지 표기위반 물품(가방, 시계, 의류 등) 전시

□ 개최 계획

○ 일 시 : **'14. 11. 24(월) 14:00 ~ 17:30** (3시간 30분)

○ 장 소 : 코엑스 3층 327호 (강남구 삼성동, 200명 규모)

○ 참 석 : 무역위 상임위원, 특허청·경찰청, 변호사, 변리사, 유관 기관 및 협회 관계자, 대학생 등 약 200명 이상

* 주최 : 무역위원회 / 주관 :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

□ 세부 일정

시 간	내 용	비 고
14:00 ~ 14:05	안 내 (5")	의류산업협회
14:05 ~ 14:10	인사말 (5")	무역위 상임위원
14:10 ~ 14:30	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지킴이 1기 활동 결과 보고 및 2기 출범식 (20")	신고센터 신규지정 (베어링협회)
14:30 ~ 15:15 세션 1 정부 정책	①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(15") ② 특허청 지식재산보호 정책 (15") ③ 경찰청 기술유출사건 수사 (15")	무역위 불공정무역조사팀장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경찰청 외사수사과장
15:30 ~ 17:30 세션 2 사례 발표	① LG전자 특허분쟁 대응 전략(30") ② 영업비밀 개념 및 침해 사례연구 (30") ③ 디자인분야 특허 침해 사례 (30") ④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례 (30")	김주섭 상무(LG전자 특허센터) 이석희 변호사(김·장 법률사무소) 오세중 변리사(법무법인 해오름) 이재길 팀장(의류산업협회)

붙임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

□ **(개념)** 지재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과징금, 시정조치명령 등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무역질서를 확립

□ 조사 절차

조사 신청 (신청인→무역조사실)
- 누구든지, 서면신청(조사신청서+증빙자료)
-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

직권조사
- 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

조사개시 결정 (무역조사실/위원회보고)
-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, 보완
- 조사신청 후 20일내 결정

잠정조치
- 회복불가능한 피해발생(우려)시

사건 조사 (무역조사실)
- 서면조사 원칙, 현지조사 가능
- 외부전문가 감정, 기술설명회 등
-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한 조사·판정

의견수렴
- 판정 전 제재조치(안)에 대한 의견수렴

불공정무역행위 판정 (무역위원회)
- 조사개시 후 6월내 판정(2월씩 2회 연장 가능)
- 피신청인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
- 제재조치 수단 및 수준 결정

제재조치 시행 (무역위원회→피신청인)
- 시정조치 명령
- 과징금 부과

이의신청 (피)신청인→무역위원회)
-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 신청

이의신청 심의·결정 (무역위원회)
- 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(30일 연장 가능)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붙임 3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개요

□ 신고센터 현황 및 기능

○ **(개요)** 불공정무역행위가 지능화·복잡화되고 있으나 조사전담 인력 및 유통망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위반행위 발굴이 어려운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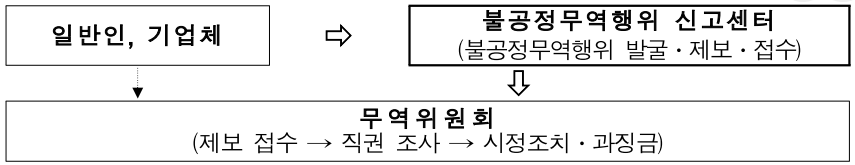
- 불공정무역행위 발굴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 단체를 신고센터로 지정·운영('07.9월~)

* <지정기관> 전자산업진흥회, 의류산업협회, 시계산업협동조합, 기계산업진흥회, 안경사협회, 광학공업협동조합(안경테), 산업용재협회(공구유통) 자동차공업협동조합(자동차부품), 온라인쇼핑협회,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, 한국판유리산업협회,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,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등 13개 단체

○ **(기능)** 발굴, 제보·접수된 불공정무역행위를 무역위 조사와 연계, 당해 업종 물품의 수입 감시 및 동향 분석, 홍보활동

- 불공정무역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 수집, 신고센터의 제보로 조사가 시되는 경우 무역위·신고센터 합동조사

<센터 업무 추진절차>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□ 주요 활동

○ **(센터별 집중조사품목 선정)** 센터별 관장품목중 불공정무역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자체 감시활동 강화

○ **(홍보·교육)** 회원사를 대상으로 무역위 제도와 역할,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및 조사사례, 신고센터 소개 등에 대해 홍보

○ **(실무자 간담회)** 신고센터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배양,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센터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 개최